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곽영학

#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0년 3월 4일
- 회부일자 : 2020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-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(시행 : 2020. 4. 1.)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직 소방공무원 정원을 두는 근거규정 및 소방현장 인력 보강 반영 등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제명변경 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→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
-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직 소방공무원 정원을 두는 근거규정 추가 (안 제1조)
- 본문 내용 및 별표 제목 중 “지방공무원”을 “공무원으로 개정 (안 제1조~제3조, 별표 1~2)

○ 정원의 총수 개정 (안 제2조)

- 총 정원: 4,139명 → 4,376명(+237명)

- 소방공무원 정원 : 2,279명 → 2,516명 (+237명)

- 집행기관, 의회사무처, 교육공무원 정원은 변동 없음

○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(안 별표 3)

- 소방직 : 2,279명 → 2,516명 (+237명)

※ 소방령 이하 (+237명)

## 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에 국가직 소방공무원 정원을 두는 근거규정 및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